

초빙교원 등 임용규정

제정: 2023.02.15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이라 칭한다) 「교원인사규정」 제2조에 의거 초빙교원등의 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“초빙교원등” 이라 함은 교육, 학생지도, 연구, 산학협력, 대외협력 등의 분야에서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4항에 의거하여 임용된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) ①초빙교원등의 자격은 「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교육, 학생지도, 연구, 산학협력, 대외협력 등(이하 "교육등" 이라 한다) 초빙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
2. 교육등에서 본 대학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②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초빙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.

제4조(초빙교원등의 구분)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초빙교원등은 초빙교원과 기타 비전임교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임용한다.

1. 초빙교원 :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
2. 기타 비전임교원

가. 석좌교수 : 국내·외 저명한 석학 또는 사회적 명망이 있고 경력과 식견이 탁월한 자
나. 객원교수 : 교육 등을 위하여 초빙한 외국인과 정부(산하기관 포함)의 우수인력 채용제도에 의거 유치한 자, 그리고 특정기업,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한 기금으로 임용된 자

다. 강의교수 : 강의활동을 주된 임무로 임용된 자

라. 연구교수 : 연구활동을 주된 임무로 임용된 자

마. 산학협력교수 : 산학협력활동을 주된 임무로 임용된 자

바. 대외협력교수 : 대외협력활동을 주된 임무로 임용된 자

사. 교류교수 : 타대학의 전임교수 및 초빙교원으로 재직하는 자 중 본 대학교 교육 등을 위하여 임용된 자

아. 특임교수 : 학교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

자. 타 기관과의 협약(의)에 의하여 임용되는 초빙교원은 그에 적합한 명칭을 붙일 수 있다.

제5조(신규임용 및 재임용 절차) ①고등교육법 제17조 제2항 및 14조의2에 의거 초빙교원 등의 임용기준과 절차는 본 대학교 강사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초빙교원은 임용기간 종료시점에 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 학과장 및 학과 전임교원의 의견을 제출받고 계약종료일 2개월 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며,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한다.

제6조(신규임용 및 재임용 절차의 예외) ① 제4조제2호의 가목, 나목, 사목, 아목, 자목에 의거 임용하는 초빙교원등은 학과장 또는 부속(설)기관의 장(이하 "추천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의 추천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.

② 전항의 초빙교원등을 임용하고자 할 때 추천기관의 장은 관련 부서 및 학과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초빙교원등을 임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추천기관의 장이 초빙교원등을 추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전항의 제출서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이력서
2. 초빙교원활용계획서
3. 학력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및 경력증명서
4. 연구실적목록 및 실적물
5. 추천기관장의 신원보증서(외국인에 한함)
6. 외국인 등록증명서(외국인에 한함)
7.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

④ 임용계약은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하되,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개별적으로 체결한다. 다만, 타 기관과의 협약(의)에 의한 초빙교원 등은 임용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임용기간
2. 보수에 관한 사항
3. 복무 또는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입국한 후의 외국인 거류등록, 체류연장 및 기타 필요한 절차는 초빙교원등 자신이 책임을 진다.

제7조(임용기간) ① 초빙교원등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

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별도의 재계약 행위가 없으면 당연퇴직한다.

② 임용시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.

③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시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.

제8조(임무) 초빙교원등은 다음 각 호 중 초빙목적에 부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 및 학생지도
2. 연구 및 산학협력
3. 대외협력
4. 특별강의 및 세미나
5. 임용계약서에 부여되는 임무
6. 기타 총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임무

제9조(복무) ① 초빙교원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계약서에 의한다.

② 초빙교원등은 임용기간 중에 휴직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면직) 초빙교원등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 면직되며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중에도 면직할 수 있다.

1. 임용계약을 위반하는 경우
2.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3. 초빙활용분야의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
4. 병약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5.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6. 기타 초빙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1조(처우) ① 초빙교원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.

② 초빙교원등의 보수는 개별 임용계약에 의한다. 다만, 재원 부담기관이 별도로 있는 초빙교원등의 보수는 재원 부담기관과의 협약(의)에 따른다.

③ 제4조제1호의 초빙교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처우를 한다.

1.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로 가입
3. 퇴직금의 지급(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명시)

④ 제4조제2호의 초빙교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며,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.

⑤ 초빙목적 달성을 위하여 초빙교원등에게 본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시설을 지원

할 수 있다.

⑥ 본 대학교와 초빙교원등의 사정에 의하여 제8조(임무)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(강의를 담당할 경우는 학기)의 보수는 무급으로 한다.

제12조(정년) 초빙교원등의 정년은 정관 제46조의2(정년)에 준하여 적용하며, 이 경우 퇴직일은 정년 해당학기의 말로 한다.

제13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및 본 대학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임용 중인 초빙교원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의 “초빙교원 임용규정”에 따라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